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5가단519160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 2015. 11. 2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853,619원과 그 중 167,679,619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간의 별지 기재 임차권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2014. 7. 24.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소외 D에게 위 가.항 기재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67,853,619원 및 위 금원 중 167,679,619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간의 별지 기재 임차권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2014. 7. 24.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가.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D에게 위 가.항 기재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소장부분이 2015. 9. 29.까지 송달된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판사유영일

별지